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6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신설 ..... | 3 |



## I. 개요

###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468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1. 21.
- (3) 회 부 일 : 2025. 11. 24.

#### 나. 제안이유

건강보험 사무대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 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보험료의 납입의 고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이 가산금 또는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도록 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6까지 신설 및 제97조제1항, 제119조제5항·제6항).

| 현행           | 개정안                                                                          |
|--------------|------------------------------------------------------------------------------|
| <신설><br><신설> | 제6장의2 보험사무대행기관<br>제86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장의 사용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 |

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또는 경영지도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

<신 설>

<신 설>

<신 설>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3(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고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 대한 고지를 갈음한다.

제86조의4(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78조의2에 따른 가산금, 제80조에 따른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제86조의5(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



## 나. 검토의견

- 「국민건강보험법」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사용자에게 대해서 사업장 현황<sup>1)</sup>,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sup>2)</sup>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그 밖에 사업주는 공단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 등을 하여야 함.

1)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공단에 하여야 하는 사무>**

| 보험사무                             | 근거법령                                                                                                     |
|----------------------------------|----------------------------------------------------------------------------------------------------------|
|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10조(자격의 상실시기 등),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
| 외국인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 외국인 가입자 자격제외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시행규칙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
| 사업장 적용·내용변경·탈퇴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시행규칙 제3조(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신고)                                                           |
| 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등(연말정산, 퇴직정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등의 통보),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시행규칙 제40조(보수총액 등의 통보) |
| 보수월액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연말정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 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 보수월액 변경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시행규칙 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
| 보험료 경감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보험료 경감고시                          |
| 납입 고지 유예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신청 등)                                        |
| 보험료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상실 신고업무, 보수월액 변경 신고업무 등은 건강보험분야 전자민원서비스(이하 “웹EDI”)를 통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인 「웹EDI 업무대

행 위임 처리기준」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지침에서 대행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웹EDI를 통한 신고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제3조),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회계·세무·노무법인(개인사업자로 회계사·세무사·노무사를 포함한다), 행정사, 한국경영원 등이 공단에 지정을 신청한 후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5조), 대행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공단에 이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음(제6조).

####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 주요내용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웹EDI”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자격, 보수 등에 관한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기관 및 위임사업장 범위 등)** ①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하여야 하는 신고(웹EDI를 통한 신고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사업장으로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에 대해서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공단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제3조제1항에 따라 웹EDI를 통하여 대행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사업장으로 회계·세무·노무법인(개인사업자로 회계사·세무사·노무사를 포함한다), 행정사, 한국경영원 등으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

**제6조(업무위임 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사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 승인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에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임 사용자로부터 웹EDI 신고대행 업무를 수임한 업무대행기관이 웹EDI를 통하여 대행 신고를 하려면 해당 업무 수임 시 지체 없이 그 관할 공단지사에 웹EDI를 통하여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수임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업무대행기관 및 위임한 사용자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웹EDI를 통한 대행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통지를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승인·불승인)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기관: 웹EDI를 통하여 통지
  2. 위임 사용자: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통지

- 이에 2025년 7월말 기준으로 11,512개소의 웹EDI 업무대행기관이 644,660개소 사업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 웹 EDI 업무대행 현황('25.7.31.기준) >

(단위: 개소)

| 전체 사업장 수  | 웹EDI 이용 사업장 수 | 업무대행기관 수 | 위임사업장 수 |
|-----------|---------------|----------|---------|
| 2,037,210 | 1,361,897     | 11,512   | 644,660 |

주1) 웹EDI 이용 사업 장수: 웹EDI 가입사업장과 웹EDI 업무대행위임만 맡긴 사업장 수 합계

주2) 업무대행기관 수: 웹EDI를 가입한 업무대행기관 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은 사업장이나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공단에 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인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면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수탁자의 보험사무 대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sup>3)</sup>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소규모 사업장 사무처리 부담 경감과 보험업무처리 간소화·효율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sup>4)</sup>.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2015 보험사무대행기관 실무편람(근로복지공단) p. 3

- 1983년 12월 법률 제3713호로 개정·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sup>5)</sup>

1993년 12월 법률 제4644호로 제정·공포된 「고용보험법」에서도 이 법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행할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sup>6)</sup>

2003년 12월 법률 제7047호로 제정·공포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게 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음.<sup>7)</sup>

- 5) 법률 제37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1983. 12. 31. 공포 1984. 4. 1. 시행>  
제19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부당하거나 사무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 6) 법률 제4644호 「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雇傭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2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 보험사무대행 절차를 살펴보면, ① 보험사무 대행을 원하는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승낙(불승낙)을 통보하고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교부한 이후, ③ 사업주와 보험사무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④ 공단의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처리와 함께 보험사무 대행이 개시됨.<sup>8)</sup>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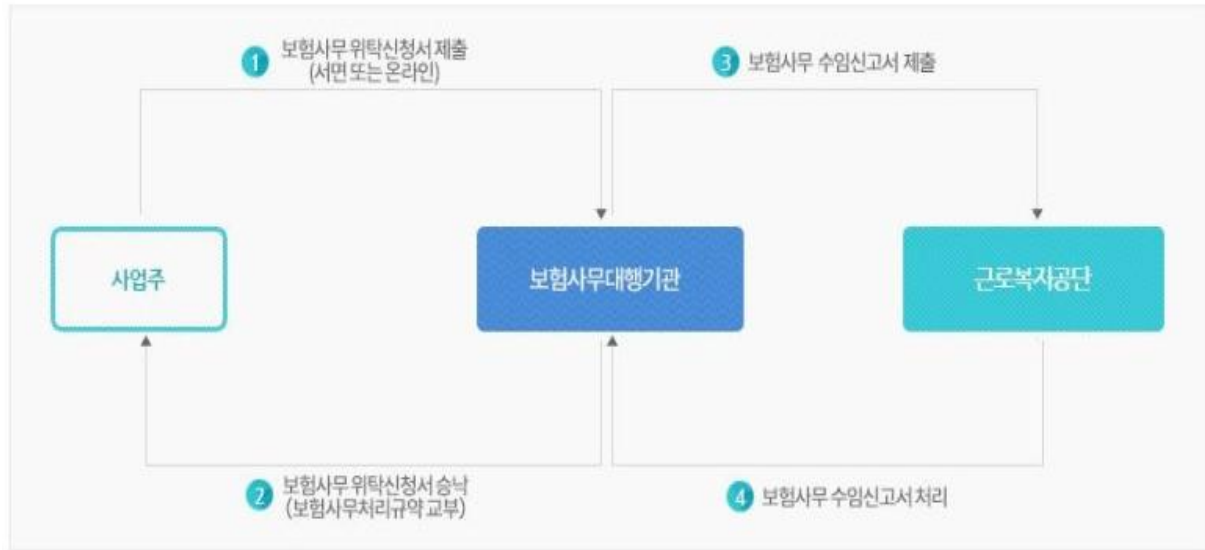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paym/offi/prxy\\_syst.jsp](https://www.comwel.or.kr/comwel/paym/offi/prxy_syst.jsp)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절차 >



자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은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지 아니한 자가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위한 변경인가, 소재지 등의 신고, 폐지 신고 등을 미이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 신고의무 등의 실효성 확보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현행법령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을 국가나 공단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안 제86조의6에 따라 공단이 직장가입자 사업주의 보험사

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현재 공단 내부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서는 회계·세무·노무법인(개인사업자로 회계사·세무사·노무사 포함), 행정사, 한국경영원 등이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안도 이를 참고하여 사용자단체,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보험사무대행 업무는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자격사에 보험사무대행을 허용할 경우 보험사무 오류로 인한 각종 피해가 우려되므로,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sup>9)</sup>

- 참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sup>10)</sup>에서는 사용자단체,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일부 직역단체<sup>11)</sup>는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보험사무의 대행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98호,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임.

9) 참고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관리 성격을 갖는 보험사무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세무사를 포함한 타 직역이 대행자격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세무사회는 전문성 및 업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자격사에 보험업무대행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과당경쟁, 불법 명의대여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것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관련 사무대행 자격을 세무사와 노무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한국공인회계사회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 직장가입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장('25.7월 기준 약 68.4% 추정)은 이미 보험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연 1회 자동화된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므로 수시 신고의 필요성이 낮고 행정절차도 단순하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음.
- 또한, 안 제86조의4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 발생 시 가산금 등의 책임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 위임자(사용자)와 수임자(보험사무대행기관) 간 민사관계로 해결할 사항으로, 공단이 이에 관여해 귀책사유의 주체 및 한도,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아울러,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장의 보험사무만을 대행하므로 그 편익이 일부 직역에만 한정되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교부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가입자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고용노동부

- 사회보험 사무는 근로자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행정업무로 그 본질은 세무·회계업무 영역이 아닌 노무관리 영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사무대행 업무는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자격사에 보험사무대행을 허용할 경우, 가입기간 누락이나 부정확한 보수총액 신고 등 보험사무 오류로 인해 사업주에게 과도한 보험료나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수급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후 검증이나 정정 신고 등으로 행정관청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납부 등은 고용·산재보험처럼 직종별 요율이 복잡하지 않고, 현재 공단은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한 신고채널(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이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임.
- 또한, 안 제86조의3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위법한 사항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금으로, 환수결정 종별(50종) 및 결정사유(1,176가지)가 매우 광범위할뿐만 아니라 수진자의 진료내역, 이용 의료기관, 민·형사·소송 관련 사항 등 고도의 민감 정보가 고지자료에 포함되어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지를 갈음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보험료 등의 고지행위는 채권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의 사

전통지와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징수처분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고지 갈음에 따른 고지내역 전달 지연 등의 귀책사유에 대한 운영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임.

-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의 납부제도 또한 기존 자진신고납부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산정의 주체가 되는 부과·고지납부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실효성 및 존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수입료는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을 것인데, 공단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사업장이 낸 보험료에서 지급되어 결국 사용자는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대행기관 미이용자(지역가입자 등)를 포함한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한국공인회계사회

- 보험사무대행은 보험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행기관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관련 사항들이 공단의 내부 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대행기관의 귀책사유(예, 거짓신고, 지연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부실 신고 및 그로 인한 영세사업자 등의 피해가 우려됨.
-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지침에 규정된 대행기관의 범위를 유사 사례(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를 참고·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한층 완화하고, 4대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며,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함.

#### □ 한국공인노무사회

-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139, 2024.2.28.)에 따를 때 노무관리 성격을 갖는 보험사무대행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타 자격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참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및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 수급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큼.
- 아울러, 행정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및 신고대행을 수행하는 것을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은 이를 입법적으로 무력화하고 전문성이 없는 자격사들이 사무대행을 명목으로 노동법률 시장에 진입하여 불법 브로커 행위를 양산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국민 권익 보호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세무사를 포함한 타 직역이 대행자격에 포함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함.

## □ 한국세무사회

-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신고 대행을 할 수 있는 개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하고 있는 세무사와 노무사로 한정하여야 함.
- 먼저, 회계사 등이 추가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공통 신고(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신고 등) 또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회계사 등에게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 대행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체계 정합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회계사의 직무가 보험사무대행업무와 관련성이 높지 않고,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에 회계사를 제외한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2020헌마139)한 바 있음.
- 아울러,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노무사, 세무사만으로도 전국 사업장의 4대보험 사무대행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가 충분함에도 전문성 및 업무 관련성 없는 다른 자격자에게 4대보험 업무대행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경쟁, 불법 명의대여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4대보험별 수행 주체가 다른 경우 수행 주체별 별도 민원 대응해야 되므로 보험행정 비효율 및 혼란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음.

- 그 밖에, 사무대행기관제도는 영세사업장의 4대보험 사무대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세무사는 대부분 기장 업무에 더해 무료로 4대 보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회계사 등이 4대 보험 업무 대행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영세사업장의 4대보험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될 것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03 |